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019

발의연월일 : 2022. 3. 31.

발 의 자:정우택・구자근・임이자

최춘식 • 한무경 • 조명희

이종성 • 양금희 • 백종헌

김학용 · 조경태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에 소정의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선거별·직위별로 일 3만원에서 7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음.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기간동안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는 바, 선거사무관계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당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실비가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 내에서 보전되고 있는데, 수당이 인상될 경우 이와 연동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인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이에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이 최저임금 시간급의 100분의 110 이상으로 8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하고, 직전에 실시한 선거에 비하여 수당 및 실비가 변동된 경우 변동분을 고려하여 선거비

용제한액을 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1조 및 제135조).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35조의 규정에 따른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과 실비가 직전에 실시한 선거에 비하여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 수당 및 실비의 증감 분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변 동할 수 있다.

제135조제2항 중 "정한다"를 "정하되, 수당의 시간급은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시간급의 100분의 110 이상으로 8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되어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제135조의 규정에 따른 선
	거사무관계자의 수당과 실비가
	직전에 실시한 선거에 비하여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 수당
	및 실비의 증감분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변동할 수
	<u>있다.</u>
<u>③</u>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① (생 략)	수당과 실비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第1項의 手當과 實費의 종	2
류와 금액은 中央選擧管理委員	
會가 <u>정한다</u> .	<u>정하되, 수당의 시간급은</u>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 시간급의
	100분의 110 이상으로 8시간 이
	<u>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되</u>
	<u> 어야 한다</u>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